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77
----------	-------

발의연월일 : 2026. 5. 7.

발 의 자 : 이기현 · 이인영 · 윤종균
박지원 · 윤건영 · 최민희
김준형 · 장철민 · 박은정
한민수 · 김교홍 · 문진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고,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만 참여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6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폭력, 금품”을 “금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폭력, 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교육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

여 직무수행의 정지를 명하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분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대표의 참석에 관한 사항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는 교육부장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설>

⑥·⑦ (생 략)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② (생 략)

<신 설>

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교육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의 정지를 명하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분리하여야 한다.

⑨·⑩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대표의 참석에 관한 사항은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는 교육부

③ · ④ (생 략)

장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는 교육감이 정한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